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5카합80960 전직금지 등 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A

채 무 자 B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2016. 7. 5.까지 서울 중구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취업하거나 동업계약, 고문계약, 자문계약 체결 기타의 방법으로 식자재 연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가 위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이 유

1. 사안의 개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단체급식 사업 및 음식점업,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등 기타 식품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2009. 12.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식품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치의 천연 항균 소재 개발, 김치 숙성 지연 기술, 저염 김치 개발 기술 등을 연구하였다.

다. 채무자는 2009. 12. 1. 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2011. 5. 27., 2014. 9. 30. 비밀유지 약정서(이하 위 서약서 등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서약서'라고 한다), 2015. 6. 4.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각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약서

4.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비롯한 기타 모든 회사의 기밀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퇴직 후 다음과 같이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치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이하 생략)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약정서

제1조 (비밀의 정의)

1. 본 약정상 비밀정보란 '직원'이 업무진행 과정에서 회사 또는 회사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취득하는 일체의 개발, 기술, 실험, 영업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개발, 기술, 실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영업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회사' 또는 '직원' 또는 다른 직원이 개발하거나 도출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2.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상기 제1조의 비밀정보를 사용 및 활용할 수 없으며(이하 생략)
3. '직원'이 '회사'와 동일업종 또는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상기 비밀정보를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 및 활용, 이용할 수 없다.

확인서

2.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향후 1년 간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창업 및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 중 취득한 업무 노하우 및 귀사의 영업 비밀사항을 퇴직 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정책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인식하여 귀사의 영업비밀을 일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라. 채무자는 2015. 7. 4.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하고 현재 D의 식품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영업비밀침해금지 신청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각 서약서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권자의 핵심 연구원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복제, 인쇄하여 반출한 후 동종업체인 D에 전직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전직금지 신청

채무자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가 있음에도 동종 업체인 D으로 전직하였다. 전직금지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D에서 김치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영업비밀침해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의 특정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거나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채권자는 이 사건 정보를 '유산균 배양액에 들어가는 유산균의 종류, 함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배합비 및 비타민, 젖산, 기타 필요한 유·무기질의 배합비에 관한 내용,' '양념 등의 재료의 종류 및 배합비에 관한 내용,' '묵은지 제조를 위한 특수한 유산균 스타터균의 종류 및 제조방법, 김치 적용방법 및 함량에 관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기재 내지 수록된 문서, 파일 등 일체'라고만 특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산균의 종류, 배합 또는 제조방법 등을 상세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② 채권자의 직원들이 연구자료 및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입력하는 연구개발시스템 PLMS(Product Life Management System)에 저장된 파일들 중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소갑 제17, 18호증)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수출용 김치 제품의 특징, 품질규격, 원재료 배합 기준, 제조과정, 상품기획, 원료규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일 뿐이고, 채무자의 발표 자료(소갑 제5호증) 역시 천연항균소재, 김치의 숙성 지연 및 방지 기술, 시장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일 뿐, 이 사건 정보 즉, 저염김치의 숙성지연을 위한 유산균 배양액 및 특수한 제조 공정, 묵은지 제조를 위한 유산균 및 겉절이 양념장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유산균 배양액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이 기재된 매뉴얼, 수치자료, 보고서의 명칭이나 내용이 제시되거나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채권자는 저염김치의 숙성 지연, 묵은지, 겉절이 양념장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천연 항균 소재로 유산균 배양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은 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상의 사용방법(채권자만이 유산균 배양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외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정을 수행하는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치 숙성 지연을 위한 천연 항균 소재(유산균 배양액)에 대하여는 이미 특허가 출원되어 그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특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출원된 6종의 유산균 중 4 내지 5종의 유산균을 이용한 배합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그 특정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④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정보가 보관된 자료, 업무매뉴얼 등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채권자 회사 내에 보관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내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나 매뉴얼 등의 문서 제목이나 파일명을 비롯하여 그가 주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그 영업비밀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 보관, 사용하였는지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⑤ 게다가 채권자의 보안관리규정에 의하면, 비밀내용이 담긴 서류, 저장장치 등 일체 정보자료 중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연구 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을 대외비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연구개발시스템 PLMS에 입력된 연구 정보는 지정된 개발 담당자만 출력이 가능하며 매뉴얼 출력 시 보안 서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주장과 소명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이 제한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나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D에서 동종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나. 전직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

1)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 후 1년간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동종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의 문구 및 내용상 채무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장소의 범위 내에서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일반적인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경쟁회사로 전직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전직을 금지할만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존재하거나 채무자가 그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종업체로 전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채무자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참조).

결국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재 판 장　　판　　사　　김　　용　　대

판　　사　　유　　형　　웅

판　　사　　김　　효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2

별지

목 록

(목록 기재 영업비밀 삭제)